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2류 주1 나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다.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먹을 수 있는 죽은 곤충(제0410호) 다~라. (생략)	
제3류 주3 신설 <신설>	3. 제0305호부터 제0308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고운 가루, 거친 가루와 펠렛은 포함하지 않는다.(제0309호)	
0302.3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0302.3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0302.3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0302.3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0302.55 --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2.55 --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3.4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0303.4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0303.4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0303.43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0303.67 --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3.67 --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75 --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75 --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87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0304.87 --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0304.94 --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94 --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중략)...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명태(Alaska Polla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 (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중략)... 무라에놀레피디대 (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명태(Alaska Pollock)(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5 -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 -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306.19 -- 기타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19 -- 기타	
0306.39 -- 기타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6.39 -- 기타	
0306.99 -- 기타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0306.99 -- 기타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클라미스(Chlamys)·프라코펙텐(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22 -- 냉동한 것 0307.29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리비와 그 밖의 펙티니대(Pectinidae)과의 조개 :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22 -- 냉동한 것 0307.29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92 -- 냉동한 것 0307.99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7.92 -- 냉동한 것 0307.99 -- 기타	
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 -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신설>	03.09 - 어류·갑각류와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	호 +1 소호 +2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릿(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p> <p>0309.10 -- 어류의 것</p> <p>0309.90 -- 기타</p>	
<p>제4류 주2, 주5 나목, 주6 신설</p> <p>1. (생략)</p> <p><신설></p> <p>2~3. (생략)</p> <p>4.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신설></p> <p>가~다. (생략)</p> <p><신설></p>	<p>1. (생략)</p> <p>2. 제0403호의 목적상 요거트는 농축하거나 가향할 수 있으며 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 과일, 너트, 코코아, 초컬릿, 향신료, 커피 또는 커피 추출물, 곡물 또는 베이커리 제품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첨가된 물품이 밀크 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되고 전체 물품은 요거트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여야 한다.</p> <p>3~4. (생략)</p> <p>5.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가. 식용에 부적합한 죽은 곤충(제0511호) 나~라. (생략)</p> <p>6. 제0410호의 목적상 '곤충'이란 먹을 수 있는 곤충의 전체 또는 일부분으로, 신선, 냉장, 냉동, 건조, 훈제,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드러나 이 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하며, 조제 또는 보존처리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제4부)</p>	
<p>04.03 -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04.03 - 요구르트,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0403.10 - 요구르트</p>	<p>0403.20 - 요구르트</p>	
<p>04.10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p>	<p>04.10 - 곤충과 그 밖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p> <p>0410.10 - 곤충</p> <p>0410.90 - 기타</p>	<p>소호 +1</p>
<p>제7류 주5 신설</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5. 제0711호는 소비하기 전, 운송 또는 보관중의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가 분류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0704.10 -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headed broccoli)	0704.10 - 꽃양배추와 브로콜리(broccoli)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0709.59 -- 기타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0709.52 -- 볼레투스(Boletus)속의 버섯 0709.53 -- 칸타렐루스(Cantharellus)속의 버섯 0709.5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0709.55 -- 송이버섯(Tricholoma matsutake, Tricholoma magnivelare, Tricholoma anatolicum, Tricholoma dulciolens, Tricholoma caligatum) 0709.56 -- 송로버섯(Tuber spp.) 0709.59 -- 기타	소호 +5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0712.34 -- 표고버섯(Lentinus edodes)	소호 +1
제8류 주4 신설 <신설>	4. 제0812호는 소비하기 전, 운송 또는 보관중의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하여 처리(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가 분류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0802.90 - 기타	- 기타 0802.91 -- 잣,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0802.92 -- 잣, 껍데기를 벗긴 것 0802.99 -- 기타	소호 +2
08.12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08.12 -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10류 주1 나목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이와 유사하게, 사포닌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거된 퀴노아로 그 밖의 다른 공정을 수행하지 않은 퀴노아는 제1008호에 분류한다.	
<신설>	1211.60 -- 아프리카 체리(<i>Prunus africana</i>) 나무의 껍질	소호 +1
제3부 표제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동물성·식물성·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표제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동물성·식물성·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제15류 소호주 <신설> 1.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 (rape oil, colza oil)”란 (생략)	제1509.30소호의 목적상, 버진 올리브유는 유리산도가 올레산(oleic acid)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 이하로 나타나며, 코덱스 규격 33-1981에 명시된 특성에 따라 다른 범주의 버진 올리브유와 구분할 수 있다. 2 소호 제1514.11호와 제1514.19호에서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 (rape oil, colza oil)”란 (생략)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 버진(virgin)	15.09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20 -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소호 +2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1509.90 - 기타	1509.30 - 버진 올리브유 1509.40 - 기타 버진 올리브유 1509.90 - 기타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신설> <신설>	15.1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10 - 가공하지 않은(crude) 올리브 포마스유 1510.90 - 기타	소호 +1
15.15 -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1515.6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그 분획물	소호 +1
15.16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신설>	1516.30 - 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그 분획물	소호 +1
15.17 -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 - 마가린,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8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	15.18 -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하거나 진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p>	<p>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p>	
<p>제4부 표제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p>	<p>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사람의 체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p>	
<p>제16류 표제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p>	<p>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p>	
<p>제16류 주1, 주2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脣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脣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생략)</p>	<p>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제4류 제6호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脣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그리고 곤충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생략)</p>	
<p>제16류 소호주1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脣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중략)...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脣肉)이 눈에 보일</p>	<p>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설육(脣肉)·피나 곤충을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중략)... 그 조제품에는 육·설육(脣肉)이나 곤충이 눈</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16.01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脣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1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脣肉)·피나 곤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脣肉)이나 피	16.02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脣肉)·피나 곤충	
제18류 주1 1. 이 류에서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은 제외한다.	1. 이 류에서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가. 소시지·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 나. 제0403호·제1901호·제1902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	
제19류 주1 가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脣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 식료품으로서 소시지·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제16류)	
제2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신설> 나. 소시지·육·설육(脣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다~라.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식물성 지방과 기름(제15류) 다. 소시지·육·설육(脣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그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 식료품(제16류) 라~마. (생략)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링곤베리[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0.09 -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 - 과실 및 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포멜로(pomelo) 주스	
<p data-bbox="268 902 691 981">- 그 밖의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p> <p data-bbox="158 992 691 1238">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p> <p data-bbox="158 1249 363 1283">2009.89 -- 기타</p>	<p data-bbox="802 902 1225 981">- 그 밖의 한 가지 과실 · 견과류나 채소로 된 주스</p> <p data-bbox="699 992 1233 1272">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주스, 링곤베리[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p> <p data-bbox="699 1283 906 1317">2009.89 -- 기타</p>	
<p data-bbox="158 1339 435 1373">제21류 주1 바목 신설</p> <p data-bbox="158 1384 691 1552">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마. (생략) <신설> 바~사. (생략)</p>	<p data-bbox="699 1384 1233 1552">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마. (생략) 바. 제2404호의 물품 사~아. (생략)</p>	
22.02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 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3.06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	23.06 -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한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상품(니코틴을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상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고안된 것	
제24류 주2, 주3 신설 <신설>	2. 제2404호와 이 류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한다. 3. 제2404호의 목적상 "연소없이 흡입"이라 함은 가열장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하여 연소 없이 흡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설>	24.04 -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을 함유한 제품 또는 담배·니코틴 대용품을 함유한 제품으로 연소하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것, 그 밖의 니코틴을 함유한 제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하도록 고안된 것 - 연소하지 않고 흡입하도록 고안된 제품 2404.11 -- 담배나 담배대용품을 함유한 것 2404.12 -- 기타, 니코틴을 함유한 것 2404.19 -- 기타 - 기타 2404.91 -- 씹거나 먹는 방식의 것 2404.92 -- 피부투여 방식의 것 2404.99 -- 기타	호 +1 소호 +6
제25류 주2 마목 신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라. (생략) <신설> 마~자. (생략)	제25류 주2 마목 신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라. (생략) 마. 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제 3816호) 바~차. (생략)	
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燒)한 것인지	25.18 - 백운석(白雲石)[하소(.燒)한 것인지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p> <p>2518.10 - 하소(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p> <p>2518.20 - 하소(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p> <p>2518.3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p>	<p>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p> <p>2518.10 - 하소(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p> <p>2518.20 - 하소(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p> <p><삭제></p>	
<p>제26류 주1 바목</p> <p>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112호)</p>	<p>바.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 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제7112호 또는 제8549호)</p>	
<p>제27류 소호주 5</p> <p>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p>	<p>5. 제2710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의 모노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p>	
<p>제6부 주4 신설</p> <p><신설></p>	<p>4. 그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제6부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호의 용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제3827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3827호에 분류하지 않고 그 물품의 명칭이나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p>	
<p>2844.40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p>	<p>-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p>	<p>소호 +3</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p>	<p>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p> <p>2844.41 -- 트리튬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트리튬과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2844.42 -- 악티늄-225·악티늄-227·캘리포늄-253·큐리움-240·큐리움-241·큐리움-242·큐리움-243·큐리움-244·아인슈타늄-253·아인슈타늄-254·가돌리늄-148·폴로늄-208·폴로늄-209·폴로늄-210·라듐-223·우라늄-230 또는 우라늄-232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 원소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2844.43 -- 그 밖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2844.44 -- 방사성 잔재물</p>	
<p>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신설></p> <p><신설></p> <p><신설></p> <p>2845.90 - 기타</p>	<p>28.45 -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p> <p>2845.20 - 보론-10에 농축된 보론과 그 화합물</p> <p>2845.30 - 리튬-6에 농축된 리튬과 그 화합물</p> <p>2845.40 - 헬륨-3</p> <p>2845.90 - 기타</p>	<p>소호 +3</p>
<p>제29류 주1 사목 1.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않는 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 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 성(芳香性) 물질을 첨가한 것(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 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다)</p>	<p>사. 가목·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 의 물품에 그 물품의 식별이나 안전을 위하여 항분제(抗粉劑)·착색제·방향 성(芳香性) 물질·구토제를 첨가한 것 (그러한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에 특 별히 더 적합하게 되는 것은 제외한 다)</p>	
<p>제29류 주4 4. (중략)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란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에서 열거한 관능(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것)을 말 한다.</p>	<p>제29류 주4 4. (중략) 제2911호, 제2912호, 제2914호, 제2918호, 제2922호에서 "산소관능"(이 들 해당호의 특성 유기산소를 함유하는 그룹)이란 제2905호부터 제2920호까지 에서 열거한 산소관능을 말한다.</p>	
<p>-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브 롬화·요드화유도체</p> <p>2903.31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 모에탄)</p> <p>2903.39 -- 기타</p>	<p>-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p> <p>2903.41 --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p> <p>2903.42 -- 디플루오르메탄(HFC-32)</p> <p>2903.43 -- 플루오르메탄(HFC-41), 1,2-디플 루오르에탄(HFC-152)과 1,1-디 플루오르에탄(HFC-152a)</p> <p>2903.44 --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 1,1,1-트리플루오르에탄 (HFC-143a)과 1,1,2-트리플루오 르에탄(HFC-143)</p> <p>2903.45 -- 1,1,1,2-테트라플루오르에탄 (HFC-134a)과 1,1,2,2-테트라플 루오르에탄(HFC-134)</p> <p>2903.46 -- 1,1,1,2,3,3-헵타플루오르프로 판(HFC-227ea), 1,1,1,2,2,3-헥사 플루오르프로판(HFC-236cb), 1,1,1,2,3,3-헥사플루오르프로판 (HFC-236ea)과 1,1,1,3,3,3-헥사 플루오르프로판(HFC-236fa)</p> <p>2903.47 -- 1,1,1,3,3-Pentafluoropropane (HFC-245fa) and 1,1,2,2,3-pen- tafluoropropane (HFC-245ca)</p> <p>2903.48 -- 1,1,1,3,3-펜타플루오르부탄 (HFC-365mfc)과 1,1,1,2,2,3,4,5,5,5-데카플루오르</p>	<p>소호 +12</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펜탄(HFC-43-10mee) 2903.49 -- 기타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유도체 2903.51 -- 2,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yf), 1,3,3,3-테트라플루오르프로펜(HFO-1234ze)과 (Z)-1,1,1,4,4,4-헥사플루오르-2-부텐(HFO-1336mzz) 2903.59 -- 기타 - 비환식탄화수소의 브롬화·요드화 유도체 2903.61 -- 브롬화메틸(브로모메탄) 2903.62 -- 에틸렌 디브로마이드(ISO) (1,2-디브로모메탄) 2903.69 -- 기타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HCFC-22)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HCFC-123)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HCFC-141, 141b)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HCFC-142, 142b)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HCFC-225, 225ca, 225cb)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Halon-1211),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Halon-2402)	
제29류 제4절 표제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에테르·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과산화케톤·3원고리의 에폭시드·아세탈·헤미아세탈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과산화케톤(화학	29.09 - 에테르·에테르알코올·에테르페놀·에테르알코올페놀·과산화알코올·과산화에테르· 과산화아세탈과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6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신설>	2930.10 - 2-(엔,엔-디에틸아미노)메탄티올	소호 +1
29.31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 2931.3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3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2931.3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2931.34 --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산 나트륨 2931.35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2931.36 -- (5-에틸-2-메틸-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37 --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38 -- 메틸포스포 산과 (아미노이미노 메틸)우레아의 염(1 : 1) 2931.39 -- 기타 2931.90 - 기타	29.31 -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4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2931.4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2931.44 -- 메틸포스포산 2931.45 --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 메틸)우레아의 염(1 : 1) 2931.46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란-2,4,6-트리옥사이드 2931.47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2931.48 -- 3,9-디메틸-2,4,8,10-테트라옥사-3,9-디포스파스피로[5.5] 언데칸 3,9-디옥사이드 2931.49 -- 기타 -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51 -- 메틸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2931.52 -- 프로필포스포닉 디클로라이드 2931.53 -- 오-(3-클로로프로필) 오-[4-니트로-3-(트리플루오로메틸)페닐] 메틸포스포노시오네이트 2931.54 -- 트리클로르폰(ISO) 2931.59 -- 기타	소호 +5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2931.90 - 기타	
<신설>	2932.96 -- 카보푸란(ISO)	소호 +1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카펜타닐(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닐(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레미펜타닐(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신설>	2933.34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2933.35 -- 3-퀴누클리도놀 2933.36 -- 4-아닐리노-N-펜에틸피페리딘(ANPP) 2933.37 -- N-펜에틸-4-피페리돈(NPP)	소호 +4
<신설>	2934.92 -- 그 밖의 펜타닐과 그 유도체	소호 +1
2936.24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2936.24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2939.43 -- 캐친(INN)과 그 염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2939.49 -- 기타	- 마황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2939.43 -- 캐친(INN)과 그 염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2939.45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2939.49 -- 기타	소호 +1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1 -- 코카인 · 엑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2 -- 코카인 · 엑고닌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9.79 -- 기타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9.79 -- 기타</p>		
<p>제3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 품[예: 정제(tablet) · 추잉껌 · 패치(피부 투여 방식)](제2106호나 제3824호) 다~아. (생략) <신설></p>	<p>나.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흡연자의 금 연을 보조하기 위한 제품[예: 정제 (tablet) · 추잉껌 · 패치(피부투여 방 식)](제2404호) 다~아. (생략) 자. 제3822호의 진단용 시약</p>	
<p>제30류 주4 마목 4.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3006호로 분류 하며,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않는 다. 마. 혈액형 분류용 시약</p>	<p>마. 공인된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플라시보 와 맹검(이중맹검) 테스트 키트(일정 투여량으로 포장된 것으로 활성의료성 분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관계없다)</p>	
<p>30.02 - 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 진단 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 청 ·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 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 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p>	<p>30.02 - 사람의 피, 치료용 · 예방용 · 진단 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 청 ·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 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 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 · 독소 ·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 포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 다)</p>	
<p>-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3002.11 --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 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 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p>	<p>-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 없다) <삭제>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 물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 로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p>	<p>소호 -2</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3002.19 -- 기타	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정한다) <삭제>	
3002.20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30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 백신, 독소,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41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42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3002.49 -- 기타	소호 +1
<신설>	- 세포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3002.51 -- 세포요법용 제품 3002.59 -- 기타	소호 +2
3006.2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삭제>	소호 -1
<신설>	3006.93 -- 공인된 임상실험에 사용되는 플라시보와 맹검(이중맹검) 테스트 키트(일정 투여량으로 포장된 것)	소호 +1
<신설>	3204.18 -- 카로틴 착색제와 이들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	소호 +1
제34류 주1 가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가.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식용 혼합물과 조제품(제1517호)	
-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 -- 음이온성 3402.12 -- 양이온성 3402.13 -- 비이온성 3402.19 -- 기타 3402.20 - 소매용 조제품	- 양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31 -- 리니어 알킬벤젠산과 그 염 3402.39 -- 기타 - 기타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41 -- 음이온성 3402.42 -- 비이온성 3402.49 -- 기타 3402.50 - 소매용 조제품	소호 +1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	36.03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	소호 +5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뇌관 <신설></p>	<p>뇌관 3603.10 - 도화선 3603.20 - 도폭선 3603.30 - 격발뇌관(Percussion caps) 3603.40 - 뇌관(Detonating caps) 3603.50 - 점화기 3603.60 - 전기뇌관</p>	
<p>제37류 주2 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p>	<p>2. 이 류에서 “사진”이란 광선이나 복사선에 따라 감광성(감열성을 포함한다) 면에 직접·간접으로 가시상(可視像)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8류 주1 다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신설> 다~마. (생략)</p>	<p>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나. (생략) 다. 제2404호의 물품 라~바. (생략)</p>	
<p>제38류 주4 가목 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략) ...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과 폐전지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p>	<p>4. 이 표에서 “생활폐기물”은 가정·호텔·식당·병원·가게·사무실 등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략) ... 다만,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 플라스틱·고무·나무·종이·직물·유리나 금속의 폐기물, 전기·전자 폐기물과 스크랩(폐전지를 포함한다) 등과 같은 폐기물로부터 분리 수거된 개개의 재료나 제품으로 이 표의 적당한 호에 해당하는 것</p>	
<p>제38류 주7 7. 제3826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p>	<p>7. 제3826호의 소호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를 말한다.</p>	
<p>제38류 소호주1 1. 소호 제3808.52호와 제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앨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특</p>	<p>1. 소호 제3808.52호와 제3808.59호는 다음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제3808호의 물품만을 포함한다. 알라클로르(ISO), 알디카브(ISO), 앨드린(ISO), 아진포스-메틸(ISO), 비나파크릴(ISO), 캄페클로(ISO)(특</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사핀, 캡타폴(IS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 및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펜타클로로페놀(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 술폰일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p> <p>소호 제3808.59호에는 또한 베노밀(ISO), 카보퓨란(ISO), 타이람(ISO)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분제(粉劑) 제형(劑形)도 포함된다.</p>	<p>사핀, 캡타폴(ISO), 카보퓨란(SIO), 클로단(ISO), 클로디메폼(ISO), 클로로벤질레이트(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이나 그 염, 디노셉(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엔도설판(ISO), 에틸렌디브로마이드(ISO)(1,2-디브로모에탄), 이염화에틸렌(ISO)(1,2-디클로로에탄),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헵타클로르(ISO), 헥사클로로벤젠(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수은화합물, 메타미도포스(ISO), 모노크로토포스(ISO), 옥시란(산화에틸렌), 파라티온(ISO),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펜타클로로페놀(ISO)과 그 염이나 에스테르,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 포스파미돈(ISO),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와 그 염이나 에스테르, 트리부틸틴 화합물, 트리클로르폰(ISO).</p>	
<p>제38류 소호주3</p> <p>3. 소호 제3824.81호부터 제3824.88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p>	<p>3. 소호 제3824.81호부터 제3824.89호까지는 다음의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는 혼합물과 조제품만을 포함한다. 옥시란(산화에틸렌),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앨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DDT(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 또는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p>	<p>(ISO), 미렉스(ISO),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 펜타클로로벤젠(ISO), 헥사클로로벤젠(ISO),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 테트라·펜타·헥사·헵타·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 단사슬 염소화 파라핀. 단사슬 염소화파라핀이란 염소화 정도가 48% 이상이며 다음의 분자구조를 가진 화합물의 혼합물을 말한다. $C_xH_{(2x-y+2)}Cl_y$, ($x=10\sim 13$, $y=1.13$)</p>	
<p>38.16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p>	<p>38.16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성 래밍 믹스를 포함하고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p>	
<p>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p>	<p>38.22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키트상태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p> <p>-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키트상태로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3822.11 -- 말라리아용 3822.12 -- 지카와 그 밖에 Aedes 속의 모기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용 3822.13 -- 혈액형 분류용 3822.19 -- 기타 3822.90 - 기타</p>	<p>소호 +4</p>
<p>-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s)·과불화탄소(PFCs)·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삭제></p>	<p>소호 -9</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3824.72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p> <p>3824.73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p> <p>3824.74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 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3824.75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p> <p>3824.76 -- 1,1,1-삼염화에탄(메틸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p> <p>3824.77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p> <p>3824.78 --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p> <p>3824.79 -- 기타</p>		
<신설>	3824.89 -- 단사슬 염화파라핀을 함유한 것	소호 +1
<신설>	3824.92 -- 메틸포스폰산의 폴리글리콜 에스테르	소호 +1
<신설>	<p>38.27 -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p> <p>- 염화불화탄소(CFC)를 함유한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과불과탄소(PFC) 또는 수소불화탄소(HFC)를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를 함유한 것,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를 함유한 것,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한 것</p> <p>3827.11 -- 염화불화탄소(CFC)를 함유한 것(수소염화불화탄소(HCFC), 과불과탄소(PFC) 또는 불화탄화수소</p>	<p>호 +1</p> <p>소호 +19</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HFC)를 함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다)</p> <p>3827.12 -- 수소브롬화불화탄소(HBFC)를 함유한 것</p> <p>3827.13 -- 카본 테트라클로라이드를 함유한 것</p> <p>3827.14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한 것</p> <p>3827.20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Halon-1211) ·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Halon-1301) ·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Halon-2402)을 함유하는 것</p> <p>-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3827.31 -- 제2903.41소호부터 제2903.48소호의 물질을 함유한 것</p> <p>3827.32 -- 기타, 제2903.741소호부터 제2903.75소호의 물질의 함유한 것</p> <p>3827.39 -- 기타</p> <p>3827.40 - 메틸브로마이드(브로모메탄)나 브로로클로로메탄을 함유한 것</p> <p>-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이나 과불화탄소(PFC)을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3827.51 -- 트리플루오르메탄(HFC-23)을 함유한 것</p> <p>3827.59 -- 기타</p> <p>- 그 밖의 수소불화탄소(HFC)를 함유한 것(염화불화탄소(CFC)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3827.61 -- 1,1,1-트리플루오르에탄 (HFC-143a)을 15% 이상 함유한</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것</p> <p>3827.62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펜타플루오르에탄(HFC- 125)을 55% 이상 함유한 것(비환식탄화수소(HFO)의 불포화 플루오르와 유도체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3827.63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펜타플루오르에탄(HFC- 125)을 40% 이상 함유한 것</p> <p>3827.64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1,1,1,2-테트라플루오르에탄(HFC-134a)을 30% 이상 함유한 것(비환식탄화수소(HFO)의 불포화 플루오르와 유도체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3827.65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디플루오르메탄(HFC-32)을 20% 이상, 펜타플루오르에탄(HFC-125)을 20% 이상 함유한 것</p> <p>3827.68 -- 기타, 이 호의 앞선 소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2903.41 소호부터 제2903.48소호의 물질을 함유한 것</p> <p>3827.69 -- 기타</p> <p>3827.90 - 기타</p>	
<p>제7부 주2</p> <p>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not incidental)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p>	<p>2. 제3918호나 제3919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고무와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지 않은(not subsidiary) 모티프(motif)·문자·그림을 인쇄한 것은 제49류로 분류한다.</p>	
<p>제39류 주2 저목</p> <p>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조</p>	<p>저.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조</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	
3907.20 - 그 밖의 폴리에테르	- 그 밖의 폴리에테르 3907.21 -- Bis(폴리옥시에틸렌) 메틸포스포네이트 3907.29 -- 기타	소호 +1
<신설>	3911.20 - 폴리(1,3-페닐렌 메틸포스포네이트)	소호 +1
- 장갑, 병어리장갑 4015.11 -- 외과용 4015.19 -- 기타	- 장갑, 병어리장갑 4015.12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 4015.19 -- 기타	
제42류 주2 카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카.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카.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제44류 주1 거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거.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 조립식 건축물)	거.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 조립식 건축물)	
제44류 소호주2, 3, 4 신설 <신설>	2. 소호 제4401.32호에서 "목재 브리켓(briquette)"이란 기계 목재가공업, 가구 제조업이나 그 밖의 목재 변형 활동에서 발생하는 대팻밥, 톱밥, 칩과 같은 부산물로서 직접 압축하거나 중량기준으로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하로 점결제를 첨가하여 응결시킨 것을 말한다. 이러한 브리켓(briquette)은 입방형·다면체·원통형으로 가장 짧은 단면이 25밀리미터 이상이다. 3. 제4407.13소호에서 "S-P-F"란 가문비나무(Spruce), 소나무(Pine), 전나무(Fir)의 혼교임분에서 얻어진 목재를 말하며 각각의 종의 구성비는 다양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 4. 제4407.14소호에서 "Hem-fir"란 웨스턴 솔송나무와 전나무의 혼교임분에서 얻어진 목재를 말하며 각 종의 구성비는 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양하고 정확히 알 수 없다.	
<신설>	4401.32 -- 목재 브리켓(briquette)	소호 +1
4401.40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401.41 -- 톱밥 4401.49 -- 기타	소호 +1
44.02 -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신설> 4402.90 - 기타	44.02 -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402.20 - 껍질과 너트로 만든 것 4402.90 - 기타	소호 +1
4403.21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1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5 -- 기타(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25 -- 기타(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4403.42 -- 티크(Teak)	소호 +1
4403.93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93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95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403.95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횡단면의 최소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신설>	4407.13 -- S-P-F[가문비나무(Picea)종, 소나무(Pinus)종]와 전나무(Abies)종의 것 4407.14 -- Hem-fir[웨스턴 험록(Tsuga heterophylla)과 전나무(Abies)종]의 것	소호 +2
<신설>	4407.23 -- 티크(Teak)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p> <p>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p> <p>4412.31 ~ 4412.39 (생략) <신설></p> <p>- 기타</p> <p>4412.94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p> <p>4412.99 -- 기타</p>	<p>44.12 -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p> <p>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p> <p>4412.31 ~ 4412.39 (생략) - 적층 베니어 목재</p> <p>4412.4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p> <p>4412.4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p> <p>4412.4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p> <p>4412.5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p> <p>4412.5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p> <p>4412.5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 - 기타</p> <p>4412.91 --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로 된 것</p> <p>4412.92 -- 기타, 적어도 한 쪽 바깥면의 플라이가 활엽수로 된 것</p> <p>4412.99 -- 기타, 양쪽 바깥면의 플라이 모두 침엽수인 것</p>	<p>소호 +7</p>
<p>44.14 -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p>	<p>44.14 -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p> <p>4414.10 - 열대산 목재로 된 것</p> <p>4414.90 - 기타</p>	<p>소호 +1</p>
<p>4418.1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p>	<p>-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p> <p>4418.11 - 열대산 목재로 된 것</p> <p>4418.19 - 기타</p>	<p>소호 +1</p>
<p>4418.20 - 문·문틀·문지방</p>	<p>- 문·문틀·문지방</p>	<p>소호 +1</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4418.21 - 열대산 목재로 된 것 4418.29 - 기타	
<신설>	4418.30 - 제4418.81소호부터 4418.89소호 의 물품을 제외한 기둥과 빔	소호 +1
4418.60 - 기둥과 들보	<삭제>	소호 -1
<신설>	- 가공한 구조용 목재 4418.81 -- 접착한 적층목재(glulam) 4418.82 -- 교차적층 목재(CLT 또는 X-lam) 4418.83 -- I 비임(beam) 4418.89 -- 기타	소호 +4
<신설>	4418.92 --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	소호 +1
<신설>	4419.20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소호 +1
4420.1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420.11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4420.19 - 기타	소호 +1
<신설>	4421.20 - 관(棺)	소호 +1
제46류 주2 마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 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마.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제48류 주2 너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 드)과 탐폰, 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 킨 라이너]	너. 제96류의 물품[예: 단추, 위생 타월(패 드)과 탐폰,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 너]	
제48류 주12 12.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 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not incidental) 모티프(motif)·문자·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 다.	12. 제4814호와 제4821호에 해당하는 물품 을 제외하고는 종이·판지·셀룰로오스 워딩과 이들의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지 부수적이지 않은 (not subsidiary) 모티프(motif)·문자· 회화를 인쇄한 것은 제49류에 해당한 다.	
49.05 -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 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49.05 -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 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한정한다) 4905.10 - 지구의 - 기타 4905.91 -- 책자로 된 것 4905.99 -- 기타</p>	<p>한정한다) <삭제> 4905.20 - 책자로 된 것 4905.90 - 기타</p>	
<p>제11부 주1 나목, 러목, 버목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나. 사람 머리카락과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0501호·제6703호·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 (straining cloth)(제5911호)는 제외한다. 러.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버.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바느질용 여행세트·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타자기용 리본·위생타월(패드)과 탐폰·유아용 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p>	<p>나. 사람 머리카락과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0501호·제6703호·제6704호). 다만, 일반적으로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여과포 (filtering or straining cloth)(제5911호)는 제외한다. 러. 제94류의 물품(예: 가구·침구·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버. 제96류의 물품[예: 브러시·바느질용 여행세트·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타자기용 리본·위생타월(패드)과 탐폰·냅킨(기저귀)과 냅킨 라이너]</p>	
<신설>	<p>15. 제11부 주 제1호를 제외하고, 방직용 섬유·의류·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부가적인 기능을 위한 화학적·기계적·전자적 부품을 장착한 것은 이들 부품이 섬유나 직물 내에 붙박이로 결합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11부의 해당 호에 분류한다. 다만, 전체 물품의 이 부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p>	
<p>5501.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p>	<p>-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1.11 -- 아라미드의 것 5501.19 -- 기타</p>	소호 +1
<p>제56류 주1 바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p>	<p>바. 제9619호의 위생타월(패드)·탐폰, 냅킨(기저귀)·냅킨라이너와 이와 유사한 물품</p>	
<p>57.03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p>	<p>57.03 -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p>	소호 +2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만든 바닥갈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p> <p>5703.20 -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p> <p>5703.30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p> <p>570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p>	<p>만든 바닥갈개(터프(turf)를 포함한다)[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p> <p>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p> <p>-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p> <p>5703.21 -- 터프</p> <p>5703.29 -- 기타</p> <p>-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p> <p>5703.31 -- 터프</p> <p>5703.39 -- 기타</p> <p>570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p>	
<p>-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p> <p>5802.11 -- 표백하지 않은 것</p> <p>5802.19 -- 기타</p>	<p>5802.10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p>	<p>소호 -1</p>
<p>제59류 주3 신설, 주8 가목 3호 개정</p> <p>1~2. (생략)</p> <p><신설></p> <p>3~6. (생략)</p> <p>7.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p> <p>가. (생략)</p> <p>3)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straining cloth)</p>	<p>3. 제5903호에서 "플라스틱으로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란 하나 이상의 직물층과 하나 이상의 플라스틱 슈트나 필름을 결합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들 레이어를 접착하여 조합한 것으로 그 단면에서 이들 필름이나 플라스틱 층이 육안으로 관찰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p> <p>4~7. (생략)</p> <p>8.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적용한다.</p> <p>가. (생략)</p> <p>3)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계에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나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p>	
<p>59.11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p>	<p>59.11 -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40 -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 (straining cloth)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5911.40 - 착유기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filtering or straining cloth)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p>제61류 주4</p> <p>4.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 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p>	<p>4. 제6105호와 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 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p> <p>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의류로 길거나 짧은 소매가 있고, 목 부분에서 시작하는 전체 또는 일부 트임(opening)이 있다.</p> <p>"블라우스"도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헐렁한 의류이나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며 목 부분부터 시작되는 트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p> <p>셔츠" · "셔츠블라우스" · "블라우스"는 옷 것이 있을 수도 있다.</p>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것	
<p>제62류 주4 신설</p> <p>1~3. (생략)</p> <p><신설></p>	<p>1~3. (생략)</p> <p>4. 제6205호와 제62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하며, 제62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p> <p>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의류로 길거나 짧은 소매가 있고, 목 부분에서 시작하는 전체 또는 일부 트임(opening)이 있다.</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4~9. (생략)	<p>“블라우스”도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된 허렁한 의류이나 소매가 없는 것도 있으 며 목 부분부터 시작되는 트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셔츠” · “셔츠블라우스 · “블라우스”는 옷 깃이 있을 수도 있다.</p> 5.~10. (생략)	
62.01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 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 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 (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 (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 이프(cape) · 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1.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1.12 -- 면으로 만든 것 6201.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1.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 6201.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1.92 -- 면으로 만든 것 6201.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1.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2.01 -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 (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 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 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 (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1.30 - 면으로 만든 것 6201.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소호 -4
62.02 -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 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 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 (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 (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 이프(cape) · 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62.02 -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 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 (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 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 (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 (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202.30 - 면으로 만든 것 6202.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6202.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만든 것</p> <p>6202.12 -- 면으로 만든 것</p> <p>6202.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p> <p>6202.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 기타</p> <p>6202.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p> <p>6202.92 -- 면으로 만든 것</p> <p>6202.93 -- 인조섬유의 것</p> <p>62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p>		
<p>6210.2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1.11호 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p>	<p>6210.20 - 그 밖의 의류(제6201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p>	
<p>6210.3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2.11호 부터 제6202.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p>	<p>6210.30 - 그 밖의 의류(제6202호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p>	
<p>63.06 - 방수포(tarpaulin) · 차양 · 차일, 텐트, 돛[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용 · 랜드크라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p>	<p>63.06 - 방수포(tarpaulin) · 차양 · 차일,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돛[보트용 · 세일보드(sailboard)용 · 랜드크라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p>	
<p>- 텐트</p> <p>6306.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p> <p>6306.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p>	<p>- 텐트(임시 캐노피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p> <p>6306.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p> <p>6306.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p>	
<p>제67류 주1 가목</p> <p>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straining cloth)(제5911호)</p>	<p>가.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여과포 (filtering or straining cloth)(제5911호)</p>	
<p>제68류 주1 차목</p> <p>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 조립식 건축물)</p>	<p>차.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 조립식 건축물)</p>	
<p>6802.10 -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p>	<p>6802.10 -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장 넓은 면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으로 덮이는 것으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알갱이·조각·가루	색한 알갱이·조각·가루	
- 기타 6812.91 --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6812.92 -- 종이·표지용 판지·펠트(felt) 6812.93 --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링(jointing) 6812.99 -- 기타	- 기타 6812.91 --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삭제> <삭제> 6812.99 -- 기타	소호 -2
6815.10 -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소섬유 제품, 비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6815.11 -- 탄소섬유 6815.12 -- 탄소섬유의 직물 6815.13 --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6815.19 -- 기타	소호 +3
6815.91 -- 마그네사이트·백운석·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6815.91 -- 마그네사이트(천연상태의 마그네시아를 포함한다)·백운석(천 dolime 상태의 백운석을 포함한다)·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제69류 주1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1. 이 류는 성형한 후에 불에 구워서 만든 도자제품에만 적용한다. 가. 제6904호부터 제6914호까지는 제6901호부터 제6903호까지로 분류되는 것 외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나. 수지의 경화·수화작용의 촉진·물이나 그 밖의 휘발성분의 제거 등의 목적으로 섭씨 800도 미만의 온도로 가열한 제품은 소성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러한 제품은 제69류에서 제외한다. 다. 도자제품은 조제된 무기물·비철금속 재료를 보통 실온(室溫)에서 사전에 성형하여 구워 만든 방법으로 얻어진다. 원료는 점토·용융 실리카를 포함한 규산질의 재료·녹는점이 높은 재료(예 : 산화물·탄화물·질화물·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내화점토나 인산염과 같은 결합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제(binders)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제69류 주2 자목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조립식 건축물)	자.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조립식 건축물)	
69.03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 -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도가니·머플·노즐·플러그·서포트·큐펠(cupel)·관(管)·쉬드(sheath)·막대(rod)· 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6903.1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제70류 주1 라목·마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다. (생략) <신설> 라. (생략)	라. 제86류부터 제88류의 이동수단(vehicle)용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에 한한다) 마. 제86류부터 제88류의 이동수단(vehicle)용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바. (생략)	
제70류 주1 마목 마.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 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바~사. (생략)	사. 제9405호의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 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아~자. (생략)	
70.01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	70.01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트(waste) ·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트(waste) · 스크랩(scrap)[제8549호의 음극선관과 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제외한다], 유리 괴(塊)	
70.11 -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u>전구</u> ·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 -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u>전기램프와 광원</u> · 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p>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직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리버(sliver) · 로빙(roving) · 실 · 단연사 <p>7019.11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p> <p>7019.12 -- 로빙(roving)</p> <p>7019.19 --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얇은 시트(sheet)(보일) · 웹(web) · 매트(mat) · 매트리스(mattress) · 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p>7019.31 -- 매트(mat)</p> <p>7019.32 -- 얇은 시트(sheet)(보일)</p> <p>7019.39 -- 기타</p> <p>7019.40 - 로빙(roving) 직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직물 <p>7019.51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p> <p>7019.52 --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p> <p>7019.59 -- 기타</p> <p>7019.90 - 기타</p>	<p>70.19 -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 · 로빙(roving) · 직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리버(sliver) · 로빙(roving) · 실 · 단연사와 이들의 매트(mat) <p>7019.11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p> <p>7019.12 -- 로빙(roving)</p> <p>7019.13 -- 그 밖의 실, 슬리버</p> <p>7019.14 -- 기계적으로 접착한 매트</p> <p>7019.15 -- 화학적으로 접착한 매트</p> <p>7019.19 --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 : <p>7019.61 -- 로빙의 폐쇄식 직조 직물</p> <p>7019.62 -- 그 밖의 로빙의 폐쇄식 직물</p> <p>7019.63 -- 폐쇄식 직조 직물[실의 평직물로 도포 ·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p> <p>7019.64 -- 폐쇄식 직조 직물[실의 평직물로 도포 ·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p> <p>7019.65 -- 개방식 직조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p> <p>7019.66 -- 개방식 직조직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7019.69 --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적으로 접착한 직물 : <p>7019.71 -- 베일(얇은 쉬트)</p> <p>7019.72 -- 그 밖의 폐쇄식 직물</p> <p>7019.73 -- 그 밖의 개방식 직물</p>	소호 +7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7019.80 - 글라스 울과 글라스 울의 제품 7019.90 - 기타	
7104.2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 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 한다)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 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 한다) 7104.21 -- 다이아몬드 7104.29 -- 기타	
7104.90 - 기타	- 기타 7104.91 -- 다이아몬드 7104.99 -- 기타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 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 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한다)	71.12 -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 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 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 하며 제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제15부 주1 차목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차. 제94류의 물품[예: ... 램프와 조명기구 (lamps and lighting fittings) ...]	차. 제94류의 물품[예: ... 조명기구 (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	
제15부 주2 가목 2. 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 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가. 제7307호·제7312호·제7315호·제 7317호·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용 임 플란트로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외한다(제9021호)]	
제15부 주7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 (the Interpretative Rules)에 따라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7. 복합물품의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비금속(卑金屬) 외의 재료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이 표의 통칙 (the General Interpretative Rules)에 따 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물품으로 보 는 것을 포함한다]....	
제15부 주8 가목 8.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란 금속의 제조나 금속에 대한 기계작업에 따라 발생한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을 말한다.</p>	<p>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 2) 파손·절단·마손(磨損)이나 그 밖의 사유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금속물품 	
<p>제15부 주9 신설 <신설></p>	<p>9. 제74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 다음 각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가.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제74류의 와이어바(wire-bar)와 빌릿(billet)으로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가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단순히 끝</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제 7403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이 규정은 제81류 물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p> <p>나. 프로파일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p> <p>다.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정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p> <p>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80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등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p>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 분류되는 호에는 특히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p> <p>아. 관(管)</p> <p>“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등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 · 고리 · 링을 붙인 것도 있다.	
제74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다. (생략) 라. 봉 (생략) 마. 프로파일(profile) (생략) 바. 선(線) (생략) 사. 판 · 시트 · 스트립 · 박(箔) (생략) 아. 관(管) (생략)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다. (생략)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419.10 - 체인과 그 부분품	<삭제>	소호 -1
- 기타 7419.91 --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99 -- 기타	7419.20 -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19.80 - 기타	
제75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생략) 나. 프로파일(생략) 다. 선(線)(생략) 라. 판 · 시트 · 스트립 · 박(箔)(생략) 마. 관(管)(생략)	<삭제>	
제75류 소호주2 2. 이 류의 주 제1호다목 에 불구하고 소호 제7508.10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2. 제15부 주 제9호다목 에 불구하고 소호 제7508.10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제76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생략) 나. 프로파일(생략) 다. 선(線)(생략) 라. 판 · 시트 · 스트립 · 박(箔)(생략)	<삭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마. 관(管)(생략)		
2.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 (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2. 제15부 주 제9호다목에 불구하고 소호 제7616.91호의 "선(線)"이라는 용어는 횡단면의 치수가 6밀리미터 이하인 제품 (코일 모양인지와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 없다)에만 적용한다	
제78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生략) 나. 프로파일(生략) 다. 선(線)(生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生략) 마. 관(管)(生략)	<삭제>	
제79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生략) 나. 프로파일(生략) 다. 선(線)(生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生략) 마. 관(管)(生략)	<삭제>	
제80류 주1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봉(生략) 나. 프로파일(生략) 다. 선(線)(生략) 라. 판·시트·스트립·박(箔)(生략) 마. 관(管)(生략)	<삭제>	
제81류 주1 1. 제74류의 주 제1호의 "봉", "프로파일(profile)", "선(線)"과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의 규정은 이 류에 준용한다.	<삭제>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81.03 -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3.90 - 기타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 기타 8103.91 -- 도가니 8103.99 -- 기타	
81.06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10 - 비스무트 함유량이 전 중량의 99.99를 초과하는 것 8106.90 - 기타	소호 +1
81.07 -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 - 카드뮴의 괴(塊), 가루 8107.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7.90 - 기타	<삭제>	소호 -3
81.09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8109.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9.90 - 기타	81.09 -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8109.21 -- 하프늄(hafnium) 함유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8109.29 -- 기타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109.31 -- 하프늄(hafnium) 함유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8109.39 -- 기타 - 기타 8109.91 -- 하프늄(hafnium) 함유량이 중량 비로 지르코늄의 500분의 1 미만인 것 8109.99 -- 기타	소호 +3
81.12 - 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럼븀)·레늄·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 - 베릴륨·크로뮴·하프늄·레늄·탈륨·카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인듐·니오븀(컬럼븀)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신설>	- 하프늄 8112.3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	소호 +2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랩(scrap), 가루 8112.39 -- 기타	
<신설>	- 레늄 8112.4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49 -- 기타	소호 +2
<신설>	- 카드뮴 8112.61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8112.69 -- 기타	소호 +2
제16부 주2 나목 2. 기계의 부분품은... (중략)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중략)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한다.	제16부 주2 나목 2. 기계의 부분품은... (중략)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중략)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로 분류하고 제8524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29호에 분류한다.	
제16부 주6 신설 <신설>	6. 가. 이 표 전체에서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전기·전자 조립품, 인쇄회로 보드, 전기 또는 전자 제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파손·절단·그 밖의 공정으로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없게 되었거나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정비·보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적합한 것 2) 개별 물품을 운송·적재·하역 과정에서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방법으로 포장되거나 선적된 것 나.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과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혼재된 것은 제8549호에 분류한다. 다. 이 부에는 제38류 주 제4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제84류 주2</p> <p>2.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략) ...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p> <p>다만, 제84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가. 발아용 기기·부란기·양육기(제8436호)</p> <p>나. 곡물 가습기(제8437호)</p> <p>다. 당즙 추출용 침출기(제8438호)</p> <p>라. 방직용 섬유사·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p> <p>마.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설비·실험실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p> <p>제842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가. 자루나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p> <p>나.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p> <p>제8424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가.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p> <p>나.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p>	<p>2. 제16부의 주 제3호나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략) ... 제8425호부터 제8480호까지에는 분류하지 않는다.</p> <p>가. 다만, 제84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1) 발아용 기기·부란기·양육기(제8436호)</p> <p>2) 곡물 가습기(제8437호)</p> <p>3) 당즙 추출용 침출기(제8438호)</p> <p>4) 방직용 섬유사·직물류나 그 제품의 열처리용 기계(제8451호)</p> <p>5) 기계적 작동을 하도록 설계된 기계류·설비·실험실장비로서 온도의 변화가 그 작동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능에서는 종속적인 것</p> <p>나. 제8422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1) 자루나 이와 유사한 용기를 봉합하는 재봉기(제8452호)</p> <p>2) 제8472호의 사무용 기기</p> <p>다. 제8424호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1)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호)</p> <p>2) 워터제트 절단기(제8456호)</p>	
<p>제84류 주5 신설</p> <p><신설></p> <p>5~8. (생략)</p>	<p>5. 제8462호에서 평판제품용의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이란 코일 푸는 기계·코일 평평하게 하는 기계·슬리터(slitter)·코일 감는 기계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 평평한 제품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Cut-to-length line)”란 코일 푸는 기계·코일 평평하게 하는 기계·전단기(shear)로 구성된 가공설비를 말한다.</p> <p>6~9. (생략)</p>	
<p>제84류 주6호(현행의 제5호) 라목</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5. 가~다. (생략)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5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략)</p>	<p>6. 가~다. (생략) 라. 다음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위의 주 제6호다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로 분류되지 않는다. (생략)</p>	
<p>제84류 주10 신설 <신설></p> <p>9. (생략)</p>	<p>10. 제8485호에서 “부가제조”(3D 프린팅이라고도 한다)라 함은 디지털 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예 : 금속·플라스틱이나 세라믹)를 연속적으로 부가·적층하고 경화·응고시켜 물리적인 대상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16부 주 제1호와 제84류 주 제1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5호의 설명에 부합하는 기계는 이 호에 분류하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다.</p> <p>11. (생략)</p>	
<p>제84류 주11(현행의 주9) 가목</p> <p>9. 가. 제85류의 주 제9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p>	<p>11. 가. 제85류의 주 제12호가목과 나목의 “반도체디바이스”와 “전자집적회로”의 표현은 이 주와 제8486호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이 주와 제8486호의 목적에 따라 “반도체디바이스”는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와 발광다이오드(엘이디)를 포함한다.</p>	
<p>제84류 소호주 2</p> <p>2.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84류의 주 제5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p>	<p>2. 소호 제8471.49호에서 “시스템”이란 제84류의 주 제6호다목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한 개의 입력장치(예: 키보드나 스캐너)와 한 개의 출력장치(예: 영상디스플레이장치나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p>	
<p>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p>	<p>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식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닛(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8414.70 - 기밀식의 생물학적 안전 캐비넷	소호 +1
8418.10 -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18.10 -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문 대신 서랍이 있거나 문과 서랍이 모두 있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8419.12 - 태양열 물 가열기	소호 +1
- 건조기 8419.31 -- 농산물용 8419.32 --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8419.39 -- 기타	- 건조기 8419.33 -- 동결건조 장치·냉동건조 유닛·분무건조기 8419.34 -- 기타, 농산물용 8419.35 -- 기타, 목재용·제지펄프용·종이용·판지용 8419.39 -- 기타	소호 +1
<신설>	8421.32 -- 촉매변환기나 분진 여과기(두 가지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청정·여과용으로 한정한다)	소호 +1
<신설>	8428.70 - 산업용 로봇	소호 +1
84.38 -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 -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62 -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편칭용·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 - 단조기(鍛造機)·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84.62 - 단조(鍛造)용·해머링(hammering)용·다이포징(die-forging)용(롤링 밀은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전단용·편칭용·낫칭(notching)용·니블링(nibbling)용(인발 벤치를 제외한다)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슬리팅 라인(slitting line)·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 단조용·다이포징용 열간 성형기(프레스를 포함한다)와 열간 해머	소호 +1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프레스를 포함한다)</p> <p>8462.21 -- 수치제어식</p> <p>8462.29 -- 기타</p> <p>-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p> <p>8462.31 -- 수치제어식</p> <p>8462.39 -- 기타</p> <p>- 펀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p> <p>8462.41 -- 수치제어식</p> <p>8462.49 -- 기타</p> <p>- 기타</p> <p>8462.91 -- 액압 프레스</p> <p>8462.99 -- 기타</p>	<p>8462.11 -- 밀폐단조기</p> <p>8462.19 -- 기타</p> <p>- 평판제품용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프레스 브레이크를 포함한다)</p> <p>8462.22 -- 프로파일 성형기</p> <p>8462.23 -- 수치제어식 프레스 브레이크</p> <p>8462.24 -- 수치제어식 패널 굽힘기</p> <p>8462.25 -- 수치제어식 롤 성형기</p> <p>8462.26 -- 그 밖의 수치제어식 굽힘기·접음기·교정기·펼침기</p> <p>8462.29 -- 기타</p> <p>- 평판제품용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그 밖의 전단기(프레스를 제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제외한다)</p> <p>8462.32 -- 슬리팅 라인(slitting line)·일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설비</p> <p>8462.33 -- 수치제어식 전단기</p> <p>8462.39 -- Other</p> <p>- 평판제품용 펀칭기·낫칭기(notching machine)나 니블링기(nibbling machine)(프레스를 제외하며, 펀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p> <p>8462.42 -- 수치제어식</p> <p>8462.49 -- 기타</p> <p>- 관·중공이 있는 형강·봉 가공용의 기계(프레스를 제외한다)</p> <p>8462.51 -- 수치제어식</p> <p>8462.59 -- 기타</p> <p>- 냉간 금속가공용 프레스</p> <p>8462.61 -- 액압프레스</p> <p>8462.62 -- 기계식 프레스</p> <p>8462.63 -- 서보프레스</p> <p>8462.69 -- 기타</p> <p>8462.90 - 기타</p>	
<p>8479.20 -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p>	<p>8479.20 - 동물성·비휘발성인 식물성·미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8479.83 -- 냉간 등압성형기	소호 +1
8482.4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5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	8482.4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케이지와 니들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8482.5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 (roller bearing)(케이지와 롤러의 조립품을 포함한다)	
<신설>	84.85 - 부가제조방식의 기계 8485.10 - 금속용 8485.20 - 플라스틱·고무용 8485.30 - 플라스터·시멘트·세라믹이나 유리용 8485.80 - 기타 8485.90 - 부분품	호 +1 소호 +5
84.86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 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 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 -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 (wafer)·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 적회로·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 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 에서 특 정한 기계와 기기	8486.40 - 이 류의 주 제11호다목 에서 특 정한 기계와 기기	
제85류 주5 신설 <신설> 5. 제8523호에서 (생략)	5. 제8517호에서 "스마트폰"이라 함은 자동 자료처리기계의 기능(예 : 제3자 응용프 로그램을 포함한 다수의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동시에 실행)을 수행하도록 고 안된 휴대기기용 운영체제를 갖춘 셀룰 러 통신망용 전화기로서 디지털 카메라 나 네비게이션 시스템 등 다른 기능을 장착했는지에 상관없다. 6. 제8523호에서 (생략)	
제85류 주7 신설 <신설>	7.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라 함은 최소한 표시화면을 장착하여 정 보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 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제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6~8. (생략)	<p>작된 것이다.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표시화면은 평평한 것, 곡선형인 것, 구부러지는 것, 접거나 늘일 수 있는 형태를 포함하나 이들 형태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평판 디스플레이 모듈은 영상신호를 수신하고 이들 신호를 화면의 픽셀에 할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가요소를 결합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8524호에는 영상신호를 변환하는 부품(예 : 스케일러 IC, 복조 IC나 응용프로그램 처리기)을 장착하였거나 다른 호의 물품의 특성을 가진 디스플레이 모듈은 포함되지 않는다.</p> <p>8~10. (생략)</p>	
제85류 주11 신설	<p>11. 제8539호에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가. “발광다이오드(LED) 모듈”은 전기회로 내에 정렬된 발광다이오드를 기반으로 하며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이들은 또한 전력의 공급이나 제어를 위하여 개별능동부품, 개별수동부품 또는 제8536호나 제8542호의 물품을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은 기계적 전기적 접촉을 원활히 하고 조명기구에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캡을 갖추고 있지 않다.</p> <p>나.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는 전기·기계·열·광학 부품과 같은 추가적인 부품을 결합한 하나 이상의 LED 모듈을 포함하는 광원을 말한다. 발광다이오드 모듈과 발광다이오드 램프의 차이점은 램프는 기계적 전기적 접촉을 원활히 하고 조명기구에 쉽게 갈아끼울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캡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p>	
제85류 주12(현행의 주9) 가목 9.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p>12. 제8541호와 제8542호에서 가. 1) “반도체 디바이스”란 전계(電界)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디바이스나 반도체 기반</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반도체디바이스를 말한다.	<p>의 트랜스듀서를 말한다.</p> <p>반도체 디바이스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능동·수동부품을 장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수 부품의 조립품을 포함할 수도 있다.</p> <p>이 정의에서 “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는 반도체 기반 센서·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반도체 기반 공진기·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를 말하며 개별 반도체 기반의 디바이스로 어떠한 종류의 물리적·화학적 현상·활동도 전기적 신호로 바꾸거나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현상·활동으로 바꾸는 기능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디바이스를 말한다.</p> <p>반도체 기반의 트랜스듀서의 모든 부품은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 있고 이들의 구성이나 기능을 가능하게 하도록 분리불가능하게 부가된 필수적인 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p> <p>다음의 각 표현은 아래의 설명과 같다.</p> <p>가) “반도체 기반”이란 반도체 기판 위에 형성·제조되었거나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반도체 기술로 제조되어 반도체 기판이나 재료가 트랜스듀서 기능과 성능에 핵심적이고 대체불가능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 작동은 물리적·전기적·화학적·광학적 특성을 포함한 반도체 특성에 기인한다.</p> <p>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p> <p>다) “반도체 기반 센서”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마이크로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p> <p>라) “반도체 기반 액추에이터”는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전기적 신호를 물리적인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이다.</p> <p>마) “반도체 기반 공진기”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외부 신호에 반응하여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부품을 말한다.</p> <p>바) “반도체 기반 오실레이터(oscillators)”란 반도체 디바이스의 한 형태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구조물의 물리적인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미리 규정된 주파수의 기계적 또는 전기적 진동을 발생시키는 기능을 가진 마이크로전자와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능동 부품을 말한다.</p> <p>2) “발광다이오드(LED)”란 반도체 물질에 기반하여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적외선·자외선으로 변환시키는 반도체 디바이스로 서로 전기적으로 연결되었는지에 관계없으며 보호용의 다이오드를 결합하였는지도 관계없다. 제8541호의 발광다이오드는 전력공급이나 제어를 위한 부품을 장착하고 있지 않다.</p>	
제85류 주12(현행의 주9) 나목 4)다)(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나.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중략)</p> <p>4)다)(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 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양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u>물리적 또는 화학적 양</u>"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 실제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p>	<p>4)다)(1) "실리콘 기반 센서"는 마이크로 전자 또는 기계 구조물로 구성된 것으로 덩어리 상태로 또는 반도체 표면에 만들어지고, 물리적·화학적 현상을 감지해 이를 전기신호(전기적 속성의 변화 또는 기계구조 변위의 결과로 발생)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u>물리적 또는 화학적 현상</u>"은 압력, 음파, 가속, 진동, 운동, 방위, 왜력, 자기장의 세기, 전기장의 세기, 빛, 방사능, 습도, 흐름, 화학물질의 농도 등의 현상과 관련된 것이다.</p>	
<p>제85류 주10호 삭제</p> <p>10.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p>	<p><삭제></p>	
<p>제85류 소호주 1~3 신설</p>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528.81소호는 고속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다음의 특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가진 것만을 분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속도가 마이크로초당 0.5 mm를 초과하는 것 - 시간 분해도가 50나노초 또는 그 이하인 것 - 초당 225,000 프레임을 초과하는 것 2. 제8528.82소호와 관련, 방사선 강화 또는 내방사선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는 고방사선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강되거나 설계제작된 것을 말한다. 이들 카메라는 작동상의 품질저하 없이 최소한 방사선량 50 × 10³ Gy(silicon) (5 × 10⁶ RAD (silicon))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제작되었다. 3. 제8528.83소호는 야간투시 텔레비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레코더로서 사용가능한 빛을 전자로 변환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1. (생략)	4. (생략)	
제85류 소호주 5 신설 <신설>	5. 제8548.11소호부터 제8548.19소호까지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란 파 손·절단·소진이나 그 밖의 이유 등으 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8501.3 - 그 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 발 전기	8501.3 - 그 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 발 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외한다)	
8501.6 - 교류 발전기	8501.6 - 교류 발전기(태양광 발전기를 제 외한다)	
<신설>	- 태양광 직류 발전기 8501.71 -- 출력이 50와트 이하인 것 8501.72 -- 출력이 50와트를 초과하는 것 8501.80 - 태양광 교류 발전기	소호 +3
8507.40 - 니켈-철 축전지	<삭제>	소호 -1
8514.10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11 -- 열간 등압 성형기 8514.19 -- 기타	소호 +1
8514.30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8514.31 -- 전자 빔 노 8514.32 -- 플라즈마·진공 아크식 노 8514.39 -- 기타	소호 +2
85.17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와 음성·영상이나.....	85.17 - 전화기(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화기 로 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을 포함한다)와 음성 ·영상이나.....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 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 함한다)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 (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 로 한정한다]	- 전화기(스마트폰과 그 밖의 전 화기로 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을 포함 한다)와 음성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 (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 로 한정한다]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517.12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8517.18 -- 기타	8517.13 -- 스마트폰 8517.14 -- 그 밖의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용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8517.18 -- 기타	
8517.70 - 부분품	- 부분품 8517.71 -- 각종 안테나오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17.79 -- 기타	소호 +1
8519.50 - 전화응답기	<삭제>	소호 -1
<신설>	85.24 -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구동 또는 제어회로가 없는 것 8524.11 -- 액정의 것 8524.12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것 8524.19 -- 기타 - 기타 8524.91 -- 액정의 것 8524.92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것 8524.99 -- 기타	호+1 소호 +6
8525.80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 8525.8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계기된 고속 카메라 8525.82 -- 기타,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계기된 방사선 강화·내방사선 카메라 8525.83 -- 기타, 이 류의 소호주 제3호에 계기된 야간투시 카메라 8525.89 -- 기타	소호 +3
85.29 -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 -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8539.5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소호 +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539.51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모듈 8539.52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램프	
85.41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 - 반도체 디바이스(예 :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다른 발광다이오드와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40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광다이오드 8541.41 -- 발광다이오드 8541.42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지 않은 것) 8541.43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 8541.49 -- 기타	소호 +3
8541.5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8541.51 -- 반도체 기반 트랜스듀서 8541.59 -- 기타	소호 +1
<신설>	8543.40 - 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개인용 전기 기화장치	소호 +1
85.48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8.90 - 기타	85.48 -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삭제> <삭제>	소호 -1
<신설>	85.49 - 전기·전자 웨이스트와 스크랩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9.11 --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	호 +1 소호 +11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와 스크랩, 수명이 끝난 연산축전지</p> <p>8549.12 -- 기타,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한 것</p> <p>8549.13 -- 화학적 형태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p> <p>8549.14 --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p> <p>8549.19 -- 기타 - 주로 귀금속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p> <p>8549.2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p> <p>8549.29 -- 기타 - 기타 전기·전자 조립품과 인쇄회로기판</p> <p>8549.3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p> <p>8549.39 -- 기타 - 기타</p> <p>8549.91 --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이나 그 밖의 활성 유리에서 나온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p> <p>8549.99 -- 기타</p>	
<p>제17부 주2 차목</p> <p>2.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차. 제9405호의 램프나 조명기구(lamps or lighting fittings)	차. 제9405호의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와 그 부분품	
제87류 소호주 신설 <신설>	<p>소호주</p> <p>1. 제8708.22소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기 적합한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p> <p>가.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에 한한다)</p> <p>나.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후방창문과 그 밖의 창문(틀에 끼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가열장치나 그 밖의 전기·전자장치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p>	
8701.20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p>-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p> <p>8701.2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p> <p>8701.22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p> <p>8701.23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p> <p>8701.24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p> <p>8701.29 -- 기타</p>	소호 +4
8702.30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2.3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p>-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p> <p>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p> <p>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p> <p>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p> <p>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p> <p>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p> <p>8704.90 - 기타</p>	<p>- 기타,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만을 갖춘 것</p> <p>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p> <p>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p> <p>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p> <p>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p> <p>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p> <p>8704.4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p> <p>8704.4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p> <p>8704.4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 기타,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p> <p>8704.5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p> <p>8704.5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p> <p>8704.60 - 기타, 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p>	소호 +5
<신설>	8708.22 -- 이 류의 소호주 1에 규정된 전방 윈드스크린(윈드실드), 후방 창문 및 기타 창문.	소호 +1
<p>8711.1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p>8711.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p>8711.1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p>8711.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p>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p>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p>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p>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p>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p>	
제88류 주1 신설	<p>1. 이 류에서 “무인기”라 함은 제8801호의 것을 제외하고 기내의 조종사가 없이 비행하도록 설계제작된 모든 항공기를 말한다. 이들은 유료화물을 수송하도록 설계제작되었거나 비행중에 실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장착된 디지털 카메라나 기타의 장치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p> <p>그러나, “무인기”에는 오로지 유희의 목적으로만 설계제작된 날아다니는 완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9503호)</p>	
제88류 소호주2 신설	<p>2. 제8806.21소호부터 제8806.24소호까지, 제8806.91소호부터 제8806.94소호까지에서 “최대이륙중량”이라 함은 적재중량, 장비와 연료를 포함하여 보통의 비행조건에서 이륙시의 최대 중량을 말한다.</p>	
88.02 - 제8806호의 무인기를 제외한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 로켓	88.02 -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 우주선 운반 로켓	
<p>88.03 -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p> <p>8803.1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p> <p>8803.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p> <p>8803.3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p> <p>8803.90 - 기타</p>	<삭제>	호 -1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88.06 - 무인기 8806.10 - 승객을 수송하도록 설계제작된 것 - 기타, 원격조종 비행만 가능한 것 8806.21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8806.22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29 -- 기타 - 기타 8806.91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 이하인 것 8806.92 -- 최대이륙중량이 250 그램을 초과하고 7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3 --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을 초과하고 25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4 -- 최대이륙중량이 25킬로그램을 초과하고 150 킬로그램 이하인 것 8806.99 -- 기타	호 +1 소호 +11
<신설>	88.07 - 제8801호·제8802호·제8806호 물품의 부분품 8807.1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8807.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8807.30 - 비행기·헬리콥터·무인기의 그 밖의 부분품 8807.90 - 기타	호 +1 소호 +4
89.03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8903.11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	89.03 -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견고한 선체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8903.11 -- 모터가 결합되었거나 결합되도	소호 +7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p>- 기타</p> <p>8903.91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p> <p>8903.92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p> <p>8903.99 -- 기타</p>	<p>록 설계제작된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모터를 제외한다)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8903.12 -- 모터를 사용하도록 설계제작되지 않은 것[짐을 싣지 않은 순중량이 100 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p> <p>8903.19 -- 기타</p> <p>- 범선(인플랫터블식을 제외하며 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p> <p>8903.2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p> <p>8903.2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p> <p>8903.2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p> <p>- 모터보트[인플랫터블식을 제외하며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를 제외한다]</p> <p>8903.31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p> <p>8903.32 -- 길이가 7.5 미터를 초과하고 24 미터 이하인 것</p> <p>8903.33 -- 길이가 24 미터를 초과하는 것</p> <p>- 기타</p> <p>8903.93 -- 길이가 7.5 미터 이하인 것</p> <p>8903.99 -- 기타</p>	
<p>제90류 주1 바목</p> <p>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p> <p>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p>	<p>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그러나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익용의 임플란트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은 제9021호에 분류한다.]</p>	
<p>- 그 밖의 사진기</p> <p>9006.51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p>	<p>- 그 밖의 사진기</p> <p>9006.53 -- 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p> <p>9006.59 -- 기타</p>	<p>소호 -2</p>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006.52 --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9006.53 --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9006.59 -- 기타		
90.13 -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 (생략)	90.22 -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 (생략)	
9027.80 - 그 밖의 기기	- 그 밖의 기기 9027.81 -- 질량분석기(Mass spectrometer) 9027.89 -- 기타	소호 +1
9030.3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 - 전압·전류·저항·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은 제외한다]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집적회로를 포함한다)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삭제>	소호 -1
제94류 표제 가구... (중략)..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 (생략)	가구... (중략).. 다른 류로 분류하지 않은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 (생략)	
제94류 주1 바목, 카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바.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	바. 제85류의 조명·광원과 이들의 부분품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램프나 조명기구 <u>(lamps or lighting fittings)</u> (제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용이나 장식 용 가구[전기식 가랜드(<u>garland</u>)는 제 외한다](제9505호)	카. 완구용 가구·완구용 조명기구 <u>(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u> (제 9503호) 당구대나 그 밖의 오락용으 로 특별히 설계한 가구(제9504호), 중 국등(燈)과 같은 마술(conjuring trick) 용이나 장식용 가구[조명용 스트링 <u>(lighting string)</u> 은 제외한다](제9505 호)	
제94류 주4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 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 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 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4.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 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 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 되는 건축물(예: 가옥·작업현장의 숙박 시설·사무실·학교·상점·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 조립식 건축물은 보통 표준 콘테이너에 선적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으로 제시 되나 실질적 또는 완전하게 내부가 사전 조립된 강제의 “모듈화된 빌딩 유닛”을 포함한다. 이러한 모듈화된 빌딩 유닛은 보통 영구적인 건물을 형성하기 위하여 함께 조립되도록 설계제작되어 있다.	
9401.3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401.31 -- 목재로 만든 것 9401.39 -- 기타	소호 +1
9401.40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9401.41 -- 목재로 만든 것 9401.49 -- 기타	소호 +1
9401.90 - 부분품	- 부분품 9401.91 -- 목재로 만든 것 9401.99 -- 기타	소호 +1
9403.90 - 부분품	- 부분품 9403.91 -- 목재로 만든 것 9403.99 -- 기타	소호 +1
<신설>	9404.40 - 이불, 침대보, 아이더다운, 깃털 이불[컴포터(comforter)]	소호 +1
94.05 - 램프·조명기구(lamps and light-	94.05 -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ing fitting) [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생략)]	fitting) [서치라이트(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생략)]	
9405.10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20 -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램프 9405.3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60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 · 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1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19 -- 기타 - 전기식의 테이블 · 책상 · 침대 · 마루스탠드 조명 9405.2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29 -- 기타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스트링 9405.3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39 -- 기타 -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9405.4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49 -- 기타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5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59 -- 기타 -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405.61 --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 9405.69 -- 기타	소호 +6
<신설>	9406.20 - 강제의 모듈화된 빌딩 유닛	소호 +1
제95류 주1 거목 신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하. (생략) <신설> 거~어. (생략)	가~하. (생략) 거. 무인기(제8806호) 너~저. (생략)	
제95류 주6 신설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신설>	<p>6. 제9508호에서</p> <p>가. “놀이공원의 탈 것(amusement park rides)”이란 주로 즐거움이나 오락을 목적으로 고정되거나 제한된 코스(수류(水流)를 포함한다)를 통과거나 정해진 영역 내에서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태우고 이동시키는 장치 또는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그러한 탈것은 놀이공원, 테마파크, 워터파크 내에 결합될 수 있다. 이러한 탈것은 주거지나 놀이터에 통상적으로 설치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한다.</p> <p>나. “워터파크 유희물(water park amusements)”은 건설된 통로 없이 물을 포함한 제한된 영역에서 사용하도록 특성화된 장치 또는 여러 장치와 설비의 조합을 말한다. 워터파크 유희물은 워터파크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설비만을 포함한다.</p> <p>다. 놀이공원용품(fairground amusements)”이란 기회, 힘 또는 기술을 겨루는 게임으로 보통 조작자나 승무원들을 고용하며 영구적인 건물 안이나 독립된 구내상점 등에 설치된다. 놀이공원 유희용품은 제9504호의 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p> <p>이 호에는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설비는 포함되지 않는다.</p>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오락용 기계	
95.08 -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순회극장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95.08 - 순회서커스·순회동물원, 놀이공원의 탈 것·워터파크 유희물, 놀이공원용품(실내사격연습장용품을 포함한다), 순회극장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소호 +8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508.90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공원의 탈 것·워터파크 유희물 9508.21 -- 롤러코스터 9508.22 -- 회전목마·그네·회전놀이기구 9508.23 -- 범퍼카(Dodge'em car) 9508.24 -- 동작 시뮬레이션 기기 및 무빙 씨어터(moving theatre) 9508.25 -- 물에서 타는 것 9508.26 -- 워터파크 유희물 9508.29 -- 기타 9508.30 - 놀이공원용품 9508.40 - 순회극장용품 	
제96류 주1 차목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 램프와 조명기구(lamps and lighting fittings))	차.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 조명기구(luminaires and lighting fittings))	
9609.10 - 연필과 크레용(견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609.10 - 연필과 크레용(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96.17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7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완전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9 -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96.19 -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제97류 주2 신설 <신설> 2~5. (생략)	2. 제9701호에는 대량으로 생산된 모자이크, 상업적 캐릭터의 수작업 작품 등은 이들이 예술가에 의하여 디자인되거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3~6. (생략)	
97.01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 회화·데생·파스텔 9701.90 - 기타	97.01 -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모자이크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1.21 -- 회화·데생·파스텔	소호 +4

현행(HS 2017)	개정(HS 2022)	비고
	9701.22 -- 모자이크 9701.29 -- 기타 - 기타 9701.91 -- 회화·데생·파스텔 9701.92 -- 모자이크 9701.99 -- 기타	
97.02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2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2.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2.90 - 기타	소호 +1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10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3.90 - 기타	소호 +1
97.05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10 - 수집품과 표본[고고학·민족학·사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학·해부학·고생물학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21 -- 사람의 표본 및 그 일부분 9705.22 --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있는 종의 것이나 그 일부분 9705.29 -- 기타 - 수집품과 표본[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31 -- 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9705.39 -- 기타	소호 +5
97.06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10 - 제작 후 250년을 초과한 것 9706.90 - 기타	소호 +1